



주최자배상책임공제 안내



1. 『주최자배상책임』 공제 란?

- 행사운영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주최자의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
- 주요 보상하는 손해

구분	보상하는 손해	보상하지 않는 손해
대인담보 대물담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- 손해방지비용 - 피공제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, 변호사비용, 중재,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의로 생긴 손해 -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- 피공제자가 소유, 점유, 임차, 사용하거나 보호, 관리,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 - 계약상의 가중책임
치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공제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, 피공제자의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
물적손해 담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공제자가 임대, 임차한 재물의 손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물의 하자, 사용손실로 발생한 손해 - 재물의 이동 중 발생한 손해 - 분실, 절도, 도난으로 발생한 손해 -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 발견된 손해

2. 주최자배상책임공제의 장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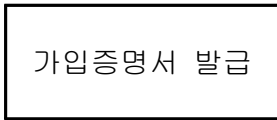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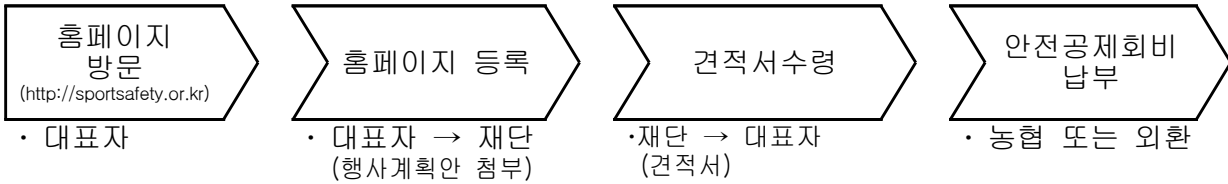
- 행사참가자의 개인정보가 필요 없음
- 체육활동 중 상해사고 및 임차한 재물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재단 전용상품
- 사고자(피해자)의 연령, 성별, 장애여부 등 과 관계없이 보상(실비효과 가능)

구분	주최자배상책임공제(재단)	영업배상책임보험(손보사)
대인담보 대물담보	행사주최자의 법률적 배상책임 보상	재단과 동일
치료비	참가자의 운동 중 상해 보상(재단전용)	참가자의 운동 중 상해 미 보상
물적손해	임차한 재물의 손해 보상(재단전용)	임차한 재물의 손해 미보상

3. 주최자배상책임 공제 업무흐름도

□ 가입 절차

○ 안전공제회비는 산출기초(행사규모 및 담보)에 따라 변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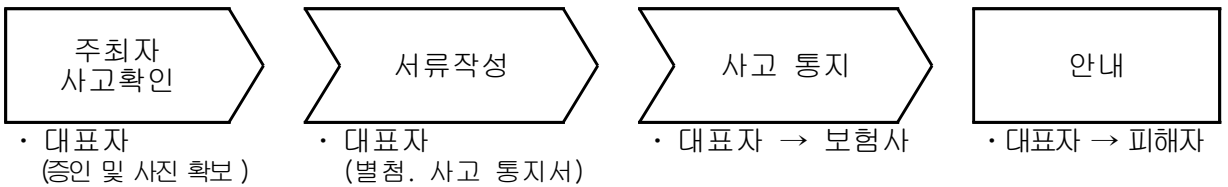


· 자동발급

※ 사전 관련 예산 통보 시, 안전공제회비 조율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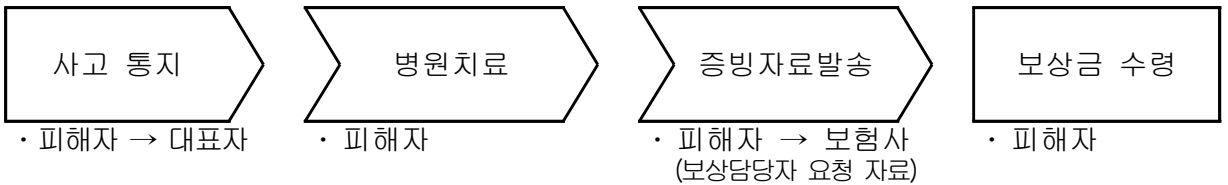
□ 사고발생 시 행동절차

○ 행사주최자 (피공제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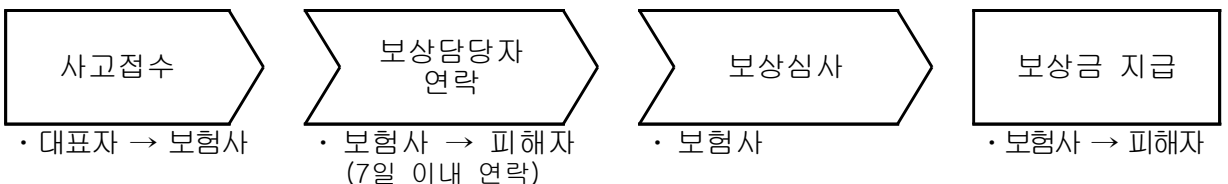
※ 대표자 비용으로 치료비 결제 시, 피해자에게 위임장 등을 수령 필요

○ 사고자 (피해자)



※ 보험사 사고접수 1주일 이내 보상담당자 개별 연락

□ 보상처리절차



※ 지급담보에 따라 보상금 지급일 변동(대인, 대물 피해자 합의 후 / 치료비 1~2주 이내)

스포츠안전재단

<http://sportsafety.or.kr>

05627)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8(구. 방이동 180-4) 4층 Tel. 1899-0547 / Fax : 02-422-7332